대 전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101062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윤〇〇

2.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정갑생, 최성아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운송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가단1907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7. 22.

주 문

-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8,791,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는 2013. 3. 29. 00:50경 ****호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마련교차로 38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제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구난작업을 하기 위해 경광등을 켠 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윤□□ 운전의 ****호 견인차량(이하 '이 사건 견인차'라 한다)의 오른쪽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윤◇◇는 2013. 3. 29. 00:57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망 윤◇◇(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우☆☆, 장☆☆, 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다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운행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무과실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 1) 갑 제5. 6. 12.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제 1심 증인 우☆☆, 장☆☆, 이☆☆, 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30~40도 정도 왼쪽으로 급격히 휘 어지는 도로이고, 사고지점 도로는 약 2~5도 정도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며, 이 사건 사고 시간은 밤으로서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시간대였던 사실, ② 당시 선행사고 로 인한 대형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1, 2차로를 모두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통제하여 우회도로로 우회시키고 있었던 사실, ③ 당 시 윤□□은 이 사건 견인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경찰순찰차, 방범순찰차 등과 함 께 경광등을 켜고 1차로 상에 정차하여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을 위하여 불빛으로 신호 를 주며 구난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④ 망인은 혈중 알콜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이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 경하여 진행한 사실, ⑤ 망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견인차의 정차 지점으로부터 방범대원인 장☆☆가 200m. 앙성파출소 소속 경위 우☆☆가 300m 전에 각 서서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봉을 들고 수신호로, 진행해 오던 차 량들을 양성방향 우회도로로 유도하고 있었던 사실, ⑥ 그런데 다른 차량들과 달리 망 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위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이 사건 견인차와 충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이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 사고사실을 알리며 감속

하라는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2, 3,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견인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민경

판사 조장환